

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한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을 보호·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,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(단, 성의교정 교직원등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직무발명규칙을 적용함)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교직원등”이라 함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수, 직원, 연구원 및 학생을 말한다.
2. “발명자”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등을 말한다.
3. “외부발명자”라 함은 교직원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.
4. “직무발명”이라 함은 교직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,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.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면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특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를 완성한 결과 나온 발명의 경우
 - 나. 특정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설비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완성된 발명의 경우
 - 다. 재직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묵비로 있다가 퇴직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
5. “특허”라 함은 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, 학술, 예술등에 관한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및 컴퓨터프로그램, 생명공학등에 관한 신지적재산권의 통칭을 말한다.
6. “자유발명”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.
7. “Know-How”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.
8. “실시보상”이라 함은 본교의 연구활동등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

및 Know-How등을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.

제 3 조(권리의 승계) ① 본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.

② 외부발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도 승계할 수 있다.

③ 본교가 제1항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2 장 신고, 출원 및 등록

제 4 조(발명의 신고) ① 교직원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특허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발명신고서(별지 제1호서식)
2. 양도증(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)
3. 발명의 내용 설명서(명세서)

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특허관리담당부서장은 지적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총장에게 제출한다.

제 5 조(승계의 결정 및 통지) ① 총장은 제3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.

② 특허관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6 조(권리의 양도) 발명자가 본교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증(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)에 의하여 본교에 양도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출원 및 등록) 특허관리담당부서장은 발명의 승계 결정 또는 제6조의 양도증을 받은 즉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(이전등록)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출원등의 제한) 발명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교가 특허를 받을 수 있

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 9 조(특허출원비용) 본교가 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 특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은 본교가 전액 부담한다.

제 3 장 지적재산권관리위원회

제10조(지적재산권관리위원회) 직무발명 및 법인 명의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특허관리담당부서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각 분야 교직원 또는 변리사등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심의안건 정리 및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12조(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무발명 결정에 관한 사항
2. 직무발명 승계에 관한 사항
3. 직무발명의 국내·외 출원,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
4. 실시보상에 관한 사항
5.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
6. 본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직무발명 및 지적재산권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3조(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14조(소위원회) 위원회는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상

제15조(실시보상금의 처리) ① 본교는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실시양도, 전용실시권의 설정,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Know-How 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허출원 및 등록관련 비용과 기술이전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보상금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.

② 기술료 수입금은 대학 50, 발명자 40, 소속부서 10의 비율로 배분한다. 이 경우 소속부서는 발명자가 정한다.

③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.

④ 본교가 연구를 지원하고 그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연구를 완성한 문학, 학술, 예술등에 관한 저작권에 대하여는 그 지분의 5분의 1을 본교에 귀속한다.

제16조(발명자의 지분) ①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특허관리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통지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.

③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대학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대학에 다툴 수 없으며,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대학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7조(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금)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.

②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.

제18조(보상금의 불반환)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(모인)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5 장 보 칙

제19조(자유발명의 승계) ① 본교는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지적재산권

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0조(발명자의 의무)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, 심사, 등록, 심판, 소송 기타 처분 및 실시를 위하여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시행세칙)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경 유			주 무	계 장	과 장	처 장	부총장	총 장
전공주임/ 사장	학부장/ 이사장							
<p>발 명 신 고 서</p> <p>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</p> <p>아래의 발명을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</p>								
발명의 명칭								
발 명 자	성 명	지분(%)	소 속		전 화			
	()							
	()							
	()							
관 련 연 구 과 제	연 구 과 제 명			연구기간	계정번호()			
출원희망국								
발명의 기술적 특 성 (,)								
비 고								

